



문서번호 : 23-2-베트남TF-03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 사회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담당: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제 목 :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송일자 : 2023. 2. 23.(목)

전송매수 : 총28매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 25명이 참여했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참했다.

그동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 법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양국 사이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 종합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및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유대 강화 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2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풍니·풍녃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지 11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이자, 1999년부터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쟁의 참전국이었음을 명백히 자각하는 동시에, 민간인학살의 가해책임을 국가에 묻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 사법적

판단은 실제의 법정에선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1심은 역사적인 판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법안발의와 관련하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베트남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두운 역사는 진실에 기반한 사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미학살 생존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신청당사자 응우옌티탄은 영상을 통해 “(학살)당시 저는 겨우 11살이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저는 실망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국의 친구들이 국회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저는 한국 정부는 물론 참전군인들이 그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제서야 저는 과거를 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이 진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 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대리인단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간인 학살은 명백히 불법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쟁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세계최초 유일의 판결이다.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단 1명의 승소일 뿐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학살 사실을 인정받길 바란다.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승소 판결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평가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박석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는 국방장관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모아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의겸, 윤미향, 공동주최한 민변 TF 소속 김남주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석미화, 심아정, 이선영, 권현우, 박석진, 김균열, 시민네트워크 소속 이정란 등이 참여했다.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2023. 2. 23(목) 13:20~13:40
국회 소통관
<p>▲ 국회의원 강민정</p> <p>▲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p> <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p>

□ 순서 사회 : 임재성 변호사

- 국회의원 강민정 : 법안 발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
- 참석 국회의원 윤미향, 김의겸 : 베트남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베트남 현지 영상) : 진화위 진상규명 촉구
- 국가배상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 풍니·풍넛 판결선고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 진상규명법 제정 필요성과 한국시민사회의 역할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진행결과 요지

2. 법안 주요내용

3.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

4. [퐁니퐁넷 학살 국가배상 판결문\(클릭\)](#)

첨부 2.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2023.02.23.)

저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이라고 합니다. 하미 마을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 생존자입니다. 저는 1957년생이며 학살 피해 당시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국의 친구들이 국회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퐁니·퐁넛 사건이 승소했을 때 저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하미 마을이나 다른 마을들을 생각하면 퐁니·퐁넛처럼 많은 증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며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국 친구들이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도 퐁니·퐁넛처럼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하미의 피해자들이 퐁니·퐁넛처럼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도 기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청원을 거부한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청원 답변을 받고 내용을 다 읽은 후 저는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았지만 역시 일이 되지 않았고 답변조차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상실은 너무도 크며 저희 가족은 5명이 희생되었고 이웃들까지 모두 13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광경에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어머니 제삿날, 그리고 모든 유가족과 마을의 제삿날에도 그랬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 제 마음은... 사람들이 과거를 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과거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제 바람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며, 그후에야 과거를 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는 물론 참전군인들이 그 진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저는 과거를 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달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서는 저는 과거를 달을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최선을 다해 말했고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베트남 정부도 우리 피해자들이 말하는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라며 국회의 목소리가 우리 베트남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해준 한국 친구들과 국회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번역: 한베평화재단

첨부 3. 발의 법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강민정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인**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학살·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7조).
- 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마.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학살·사체훼손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전쟁”이란 1954년 17도선 분할로서 분단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공화국’ 사이에서 발생된 무력충돌 중 국제전 양상이 본격화된 1964년 8월부터 1975년 4월 종전까지 베트남 각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군대”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던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3. “민간인”이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인으로 정의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작전의 기회에 행한 대한민국 군인의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3조(조사범위)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의 살해·사체훼손·행방불명·상해·성폭력·구금·가혹행위,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 1968년 2월 베트남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해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 피해 사건을 조사한 경위와 조사내용·결과 및 조작의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장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유대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과거사 진상규명 또는 국제인도법에 관하여 인권감수성이 풍부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정치·사회·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역사고증·사료편찬·지역조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군사분야 및 전쟁법 전문가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은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조사활동을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조사지원단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는 지원단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지원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고, 지원단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각 팀에 민간조사요원을 위촉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 민간조사요원은 대외적인 의사표현은 위원회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자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등

제21조(신청 및 조사) ① 피해자 또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⑥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제9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3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6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27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제2항, 제5항의 통지는 그 국가의 언어를 병기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제2항, 제5항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국가안전보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베트남의 주권존중을 위하여 결정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종합보고서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의 진상

2. 사건관련 피해자의 피해 상황

3. 사건의 발생원인

4.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 책임의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
 6.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국제인도법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8. 베트남전쟁 참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베트남의 주권존중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신청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있어 군대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같은 조와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자등과 조사대상자의 생명·신체·사생활·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존중) ① 위원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역 안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역 안에서 조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4조(실무조사지원단의 존속기간) 실무조사지원단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1조에 따른 진상조사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